

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. 2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

2. 제안이유

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2020. 5. 19. 제정, 2021. 5. 20. 시행)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. 20. ~ 1. 27.(8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제정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·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담양군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후계농업경영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농업인”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책무)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농업인(이하 “후계농업인 등”이라 한다)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농업·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과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·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」에 따른 담양군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·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,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
2. 생산·유통·가공 등 생산품 판로 확대
3. 영농기술·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·경영 컨설팅
4. 농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
5.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단체에 대한 지원)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단체가 추진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활동에 필요한 사업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중복지원 제한)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